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골자

지 난달 1일부터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청소년 출입금지 지역에만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8월 28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걸림돌이었던 韓·美간 담배양해특개정을 합의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 8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당초 예정대로 지난 9월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에 따르면 외산담배를 중심으로 성행하던 담배 관촉물의 공급이 지난 9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됐으며 연간 1백 20회 허용되던 잡지광고도 60회 이내로 제한 받게 된다.

특히 담배자판기의 경우 카바레, 단란주점, 성인디스코, 댄스교습실 등 법령으로 19세 미만의 출입이 금지된 지역이나 지역 경찰서장이 청소년 출입금지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만 설치가 허용된다.

또 구멍가게나 슈퍼 등 담배소매업자가 편리상 상점 밖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담배자판기도 상점주인이 수시로 볼 수 있는 상점 안에 옮겨 놓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말 현재 전국에 설치돼 있는 1만 5천 6백 40여대의 담배자판기 가운데 상당수가 철거되거나 위치를 바꿔 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설치돼 있는 담배자판기 가운데 철거대상 자판기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줘 일단 97년 6월말까지 철거 또는 이전해야 하며 97년 7월부터는 적발될 때마다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대규모 사무용 건물과 대형상점, 지하상가, 관광숙박업소, 결혼예식장, 관광숙박업소, 결혼예식장, 학원, 공연장, 실내체육기관, 의료기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금연지역과 흡연지역을 지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지하매장과 의료기관중 진료, 요양시설, 항공기, 철도내부, 도시철도 역사 및 차량, 지하보도, 16석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현재 담배 옆면에 부착돼 있는 흡연경고문을 제품의 앞·뒤 하단에 명기해야 한다.

그러나 경고문 부착기간에 대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주고 이미 생산·수입했거나 발주한 제품에 대해서는 1년동안 판매할 수 있다.

이 법령은 또 모든 주류에 대해 과음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을 붙이도록 하고 술·담배에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은 제품을 생산·수입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주류부문〉

-주세법에 의한 주류는 광고방송 허용시간(TV-오후 10시부터 익일 7시까지, 라디오-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에만 되며 특히 알코올 17도 이상의 주류는 광고방송이 현행처럼 금지된다. (9월 1일부터 시행)

-모든 주류에 대한 과음은 건강에 해롭다는 과음경고문을 상표 하단에 부착해야 한다.

과음경고문 부착시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경고문구를 발표한 후 6개월동안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부착이 의무화된다.

또 경고문이 발표되기 전에 생산·수입됐거나 발주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담배부문〉

-담배 판촉을 위해 판촉물 제공이 금지된다. 또 연간 1백 20회 허용되는 체육·문화행사 등 후원시 제품광고를 하지 못한다. (9월 1일부터 시행)

-담배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의 출입이 법령으로 금지돼 있는 장소(카바레,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댄스교습실, 터키탕, 유흥가)와 담배를 판매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에만 설치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슈퍼 등에서 상점주인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담배자판기 설치가 불허된다. (9월 1일부터 시행)

-이들 지역을 제외한 다른 장소에 설치된 기존의 담배자판기는 일단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97년 6월말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97년 7월 1일부터는 적발될 때마다 건당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 경고문구는 담배 포장지 앞·뒷면 하단에 부착한다.

경고문구 부착시기에 대해서는 술과 마찬가지로 6개월동안 유예기간을 주되 이 법의 발효전에 생산·수입됐거나 발주된 제품에 대해서는 1년동안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한다. (9월 1일부터 시행)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연면적 3천m²이상의 사무용건축물과 연면적 23천m²이상의 업무 및 판매시설을 겸하는 다용도 시설.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백석 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1천m²이상의 학원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해 개설허가를 받은 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 및 지하상점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에 의한 결혼예식장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공항·여객부두·철도역·버스정류장·지하보도 등 교통관련 시설 및 16석 이상의 좌석을 가진 교통수단

다만 지하상점가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과 의료기관중 환자의 진료나 요양을 위한 시설, 사회복지시설중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시설(노인을 위한 시설은 제외), 항공기·철도의 차량내부·도시철도의 지하역사 및 차량·지하보도·16석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술·담배 등에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교육>

-상시 근로자 5백명 이상의 사업장, 3백명 이상이 근무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의 법인, 종합병원, 보험자단체 등은 그 종사자 또는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납부하는 의료보험자의 부담금은 전년도 예방보건사업비의 1백분의 5로 하고 제정이 취약한 의료보험자에게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재정경제원과 협의후 추후 시행예정)

<국민영양조사>

-국민영양관리사업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사업으로 규정됨에 따라 국민영양개선훈예에 의한 이 령에서 규정되고 대신 국민영양개선훈예(대통령령)은 폐지된다. ㅈ